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이 자료에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 고시'라고 지칭함
- ▶ 자료의 내용이 협정·법·령·규칙과 다를 때에는 협정·법·령·규칙을 우선 적용함

- 목 차 -

I. 일반사항

1. 상품양허 현황
2. 협정 적용영역
3. 관세 인하 또는 철폐
4. 상품양허 유형

II. 원산지 증명

1. 정의
2. 증명방식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5.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6. 3국 송장
7.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III.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경과규정)
2. 특혜관세의 대우신청
3.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RQ) 적용

IV. 직접운송

V. 기록유지

VI.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VII. 기타

1. 관세 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2. 사전심사

I. 상품양허

1 양허 현황

□ 한-아세안 FTA 품목에 한-베트남 FTA 추가 자유화

- ※ 수입액 기준 : (우리) 94.7%, (베트남측) 92.4%
- 품목수 기준 : (우리) 95.4%, (베트남측) 89.9%

[공산품]

- 우리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235개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

- ※ 한-아세안 FTA에서 공산품 대다수를 일반품목으로 양허(2010년 관세철폐완료)
- ※ 전통 민감품목인 초산에틸(HS 2915.31.0000)만 미양허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낮았던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베트남 FTA를 통해 추가 시장 개방

- ※ 섬유·직물외에도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

[농산물]

- 베트남은 대다수 품목은 2016년, 여타품목은 2018년에 관세철폐
- 우리는 민감도가 낮거나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
- ※ 한-아세안 FTA 민감·초민감품목(525개) 중 122개에 대해 추가 개방

《 한·베트남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단위 : 백만불, %) 》

양허유형	우리 양허				베트남 양허			
	품목수	비중	對베트남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전체	12,232		5,718		9,471		15,494	
한-아세안FTA	11,169	91.3	5,245	91.7	8,245	87.1	13,375	86.3
즉시철폐	91	0.7	72	1.3	65	0.7	180	1.2
3년철폐	216	1.8	13	0.2	16	0.2	297	1.9
5년철폐	134	1.1	43	0.8	47	0.5	19	0.1
7년철폐	7	0.1	3	0.1	29	0.3	17	0.1
8년철폐	-	-	-	-	6	0.1	8	0.1
10년철폐	48	0.4	40	0.7	106	1.1	406	2.6
15년철폐	3	0.02	0.2	0.004	3	0.03	11	0.1
소계	499	4.1	172	3.0	272	2.9	937	6.1
총합계	11,668	95.4	5,416	94.7	8,517	89.9	14,313	92.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한 · 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양허단계	베트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실장어(활어), 돔(치어), 농어(치어), 피조개 종패(활어/신선/냉장)	4	즉시 철폐 (무관세)	65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 정 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합 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 품, 원유 등
방모사, 소모사, 양모사, 방모직물, 순면사, 생지, 기타면직물, 폴리에스터사, 탄성사,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남성용 바지/아우터 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양말, 코 트 및 자켓, 신사복 상의, 여성용 수트/자 켓/바지/스커트, 잠옷, 브래지어, 손수건, 스카프, 장갑, 파티클보드, 섬유판, 블록보드 등	87	즉시 철폐 (유관세)	-	-
건전지, 경유 등 석유제품, 기타고무제품, 기 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자전거, 자 전거부품, 샴푸, 헤어린스, 필름, 쇠고기(식용 설육[신선/냉장], 혀[냉동], 간장[냉동] 등), 닭고기(절단육[냉동]), 발효유, 치즈, 양송이 버섯, 포도당, 과당, 맥아추출물, 국수, 곡류 가공품, 스위트콘, 라이스페이퍼, 차/마태 조 제품, 방어(신선/냉장), 넙치(냉동), 가자미(냉 동), 피조개(신선/냉장), 갯장어(활어), 가자미 (신선/냉장), 건조어란, 제재목 등	216	3년철폐	16	기타영사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상단섬유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원동기 등
저/고밀도에틸렌, 메틸렌초산비닐, 선박용 압축정화식 엔진, 선박용 부품, 고구마(냉 동), 과일주스, 감자(조제/냉동), 잼, 두부, 향미용조제품, 기타소스류, 주류, 당면, 미 과, 인삼음료, 캐슈넛(미탈각/탈각), 가오리 (냉동), 복어(냉동), 피조개(냉동), 성게(냉 동), 조제문어, 조제소라, 조제연체동물, 가 리비과조개(기타),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 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건축용목제품 등	134	5년철폐	47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 지, 기타생활용품(프레스파스너), 기타식탁 용구, 기타유리제품, 기타직물, 순면직물, 편직물, 호방면직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무 선통신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스위치, 신 발부분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신 기기, 카스테레오, 컴포넌트, 합성수지, 향 공기부품 등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7	7년철폐	29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금속제 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볼트/너 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 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등
-	-	8년철폐	6	닭고기
베어링, 열대과일(구아바/망고/망고스틴/바나 바/파인에플 등), 기타 과일주스,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미파 쇄, 건조/기타), 생강(분쇄/파쇄, 신선/건조/ 기타), 호도(탈각/신선·건조), 동기타(냉동), 전갱이(냉동), 탈라피아(냉동), 섬유판, 합판 등	48	10년 철폐	106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 가청주파증폭기,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 위치, 모니터, 기타고무제품, 전기밥솥, 냉 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 기, 승용차(3,000cc 초과), 화물자동차(5 톤~20톤),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자레인지, 식 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 이머,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 섬유직물, 순면직물, 합성수지 등
고구마전분, 천연꿀, 팔(종자용 외)	3	15년 철폐	3	자동차부품(기어박스)
	499	소계	272	
새우(냉동/가공)	7	TRQ	-	-
	506		27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 협정적용 영역(제1.5조)

☐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베트남 : (원산지 부호 VN)

-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3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협정적용 대상

-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는 협정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

※ 협정문 제2.3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1항

☐ 협정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4 상품양허 유형

양허유형	내 용
Y-1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Y-3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3년차 1월 1일 무관세)
Y-5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Y-7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7년차 1월 1일 무관세)
Y-8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8년차 1월 1일 무관세)
Y-10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Y-15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S-1	‘16.1.1전 기준관세율 유지, ‘16.1.1일부터 0~5%로 인하
S-2	‘21.1.1전 기준관세율 유지 ‘21.1.1부터 0~5%로 인하
S-3	‘17.1.1전 기준관세율 유지 ‘17.1.1부터 ‘21.1.1.기준관세율의 20% 인하된 세율 ‘21.1.1.부터 0~5%로 인하
A	‘21.1.1전 기준관세율 유지 ‘21.1.1.부터 50%이하로 인하
B-1	‘16.1.1전 기준관세율 유지, ‘16.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실행관세율의 20%이상 인하
B-2	‘21.1.1전 기준관세율 유지 ‘21.1.1부터 한-아세안 FTA 실행관세율의 20%이상 인하
C	‘16.1.1전 기준관세율 유지, ‘16.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실행관세율의 50%이상 인하
E	기준관세율 유지
R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떤 의무도 적용되지 않음

*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가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 동일 상품에 대한 관세와 다른 경우, 더 낮은 관세가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적용

※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반 주해

Ⅱ. 원산지 증명

1 일반 정의

-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자
-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
- 재료란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및 하위 조립품을 포함
- 비원산지 상품이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
-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름
-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하더라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

2 증명방식 : 기관발급

□ [발급 기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발급

○ 베트남 : 산업무역부

□ [발급 형식]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 · 인장 인쇄

○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1부, 사본 2부로 구성

○ 원본은 수입자, 제 2사본은 수출국 보관, 제 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보관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신청권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제출서류]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 · 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 · 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5.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요청시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협정 제3.14조(원산지 증명서)

※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 3근무일은 선적일을 포함

☐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기재 하여 소급발급 가능

☐ 진정 등본

○ 분실, 도난 또는 멸실의 경우 수출당사국에 보관중인 수출 서류를 근거로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12번란) 문구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 원본의 발급일자 기재, 진정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 협정 제3.15조(원산지 증명서)

5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

6 제3국 송장

- ☐ 제3국 송장 발행을 인정하며 원산지증명서 제13란(비고)에 “비당사국 송장” 기록하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 정보를 명시

7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 ☐ 원산지증명서 서식 : “별첨 1”
- ☐ 작성요령
 - 항목별 작성요령 : “별첨 2”
 - 다수 품목의 경우 추가 면 사용 가능 : “별첨 3”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_____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과의 협정 제3.8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제11란에 기재된 수출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회경	제8란 기입사항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역내부가가치기준 등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4)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물품	"CTC" "RVC %" (예: RVC 45%) "CTH+RVC 40%" 등 "Specific Processes"
다.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라.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Article 3.5"

-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FOB가격까지 적습니다.
-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합니다.
- 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계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Original(Duplicate/Triplicate)
(Additional Page)**

Reference No.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Ⅲ. 협정관세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경과규정)

☐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경과규정

- (대상) 협정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
- (요건)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직접운송 입증서류와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 협정 제3.24조(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 특혜관세대우 신청

☐ 수입자 요건

-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요청시, 원산지 증명서, 송장,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과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수입 이후 특혜관세 신청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 ① 원산지증명서 ②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협정 제3.16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관세율 구분 부호》

부 호	내 용
FV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VN2 FVN3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V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VN2, FVN3을 순차적으로 부여
FVN4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3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 ①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② 수입물품이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입증되는 경우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RQ)

☐ [선착순방식 TRQ 품목] 해당 품목없음

☐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으로서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것

※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에서 정하는 물량을 추천기관에서 추천받아야 함

○ 대상품목 : 새우

○ HS코드 : 0306161090, 0306169090, 0306171090, 0306179090, 0306261000, 0306271000 및 1605219000.

○ 쿼터 물량 : 1년 10,000톤, 2년 11,000톤, 3년 12,100톤, 4년 13,310톤, 5년 14,641톤, 6년 15,000톤

* 이행 6년차 이후, 쿼터 물량은 15,000톤

○ 물량 초과시 기준관세율 적용

IV. 직접운송

- ☐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
- ☐ 직접운송으로 간주
 -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으로 간주
 - ① 지리적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일 것
 - ②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 ③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 ☐ 제3국 경유시 제출서류
 -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
 -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 제3.8조(직접운송)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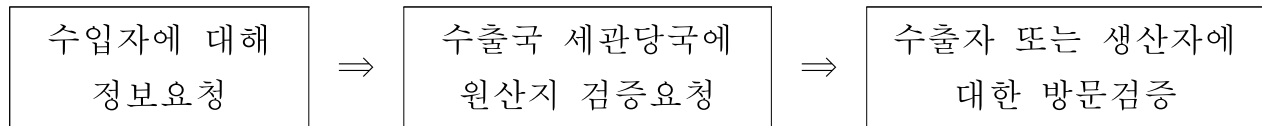
V. 기록유지

-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 수입자 : 자국법에 따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자,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 보관대상 서류 및 기간 : 특레법 제12조 및 특레법시행령 제13조 참고
* 협정 제3.18조 기록유지요건

V.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 원산지조사의 방법 : 先간접조사, 後현지조사



- 검증사유 : 무작위 또는 합리적 의심(서류 진정성,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
- 수출 세관당국은 검증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내 회신
- 6개월내 미회신 : 특혜 배제 가능
- 수출 당사국 검증 기간과 수입국의 원산지 충족여부 결정기간을 포함하여 10월이내 완료
- 수입국 세관당국은 방문검증 서면통보(생산자·수출자, 수입자, 당사국의 발급기관, 당사국 세관)
- 30일 이내 생산자 또는 수출자 서면동의 없는 경우 특혜 배제 가능
- 검증 당사국은 서면 결정서 제공
- 실제 방문에서 최종판정까지의 방문검증 절차는 6개월 내에 수행

VI. 기타 집행사항

1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①》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송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5.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로서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⑥》

1.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 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

□ 무관세 일시반입 조건(※ 협정 제2.5조(상품의 일시 반입) ③항)

- 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채권이나 담보의 공탁을 수반할 것
-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마. 그 상품이 "가"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사. 그 상품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2 수리 또는 개조물품

☐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수리 또는 개조*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수리·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 [참조]협정 제 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당사국 영역으로 일시적 반입 상품

3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 신청대상

- 품목분류
-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 신청권자

- 수입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처리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청인	▶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주관부서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심사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7일전까지)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 하다고 판단 (예: 원산지확인위원회)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 관세청 홈페이지 등
사후 관리	이의제기	신청인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주관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 보정요구 가능 : 20일 이내
	사전심사 변경	신청인 주관부서	▶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철회